

#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

노 대 환

1. 머리말
2. 숙종대 대명외리 정책
  - 1) 집권 전반기 대청관계와 대명외리론
  - 2) 집권 후반기 대명외리론의 강화작업
3. 영조대 대명외리 정책
  - 1) 집권 전반기 대명외리 통제책
  - 2) 집권 후반기 대명외리론의 강화작업
4. 맺음말

## 머리말

對明義理論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에 대하여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1644년 명나라가 청에 의해 망하자 무도한 오랑캐 국가인 청을 응징해야 한다는 對淸復讐論과 맞물려 제기되었다. 청이 안정을 구가하면서 대청복수에 근거한 北伐論은 점차 실효성을 상실해 간 반면 대명외리론인 尊周論은 북벌론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사회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1)</sup> 조선 후기 사회에서 대명외리론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이념이었던 대명외리론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개화파적 연구시각을 반성하며 양란 후 조선사회의 재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대명외리론의 전개과정을 추적한 정옥자의 선구적인 연구<sup>2)</sup> 이후 주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8-19세기 대명외리론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3-A00013)”

1) 鄭玉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9-25면. 참조

2) 鄭玉子, 1985 『大報壇 創設에 관한 연구』,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쇠퇴과정을 복학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유봉학의 연구,<sup>3)</sup> 대명의리론이 되고 있는 實의 기반에 주목한 이태진의 연구,<sup>4)</sup> 대명의리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再造之恩’의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한명기의 연구<sup>5)</sup> 등이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한편 연구의 단초를 열었던 정옥자는 대명의리를 핵심으로 하는 尊周論이 존화사상으로 계승 발전되어 갔음을 밝혀, 그간 기득권층의 자기방어 내지 수구파의 봉건질서 옹호 논리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조선중화사상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6)</sup>

이들 선행 연구성과에 힘입어 대명의리론의 큰 틀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대명의리론의 큰 틀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 대명의리론의 구체적인 실상에 접근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리의 구체적인 실상이라면 그 논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전개되어 가는 양상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리의 실제적 기능의 문제이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한 사회에서 2세기 이상 지속되었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현실적 효용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과연 그 현실적 효용성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점이 밝혀질 수 있다면 대명의리론에 대해 한 단계 진전된 이해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상의 현실적 기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대명의리론의 경우는 많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 대명의리론은 기본적으로 청이라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개념이므로 대명의리론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대청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숙종대 大報壇의 창설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듯 대명의리론이 국왕에 의해 적극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왕권의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19세기에 들면 서양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되므로 서양 세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도 살펴보아야 한다.

3) 유봉학, 1988 『18,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추이』,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출판부

4) 李泰鎭, 1994 『조선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5) 한명기, 1999 『‘재조지은’의 형성과 전개』,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6) 鄭玉子, 1998 앞의 책

당장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살피기는 어렵겠지만 하나 하나의 변수들이 검토된다면 대명의리론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명의리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살펴 대명의리론이 담당하고 있던 실제적 기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검토 시기는 숙종과 영조대로 한정하였는데 숙종·영조대가 대명의리론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이고 대명의리와 관련한 정책변화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고가 조선 후기 대명의리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숙종대 대명의리 정책

### 1) 집권 전반기 대청관계와 대명의리론

청은 명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은 완전한 통일정권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이 혹시 南明정권을 비롯한 집단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조선의 반청적 태도의 기저에 대명의리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청은<sup>7)</sup> 조선 선박이 명의 경내로 흘러들어가 통신하고 명의 병선이 나타나도 싸우지 않은 점을 문제삼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선의 동태를 주시하였다. 양국 간의 긴장관계는 북벌론이 주창되던 효종 초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1650년(효종 1) 왜구의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이유로 들어 성지수축과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가 이를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한 청에 의해 영의정 李景奭(1595-1671)이 체직되었던 사건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sup>8)</sup>

조선과 청 간의 불편한 관계는 숙종대에 들어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숙종 즉위 당시부터 서울에서는 청이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반대로 북경에서

7) 『清太宗實錄』 권63, 崇德 7년 10월 癸卯

8) 『清世祖實錄』 권47, 順治 7년 정월 乙丑·壬午; 권49, 順治 7년 7월 辛未

도 조선에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오려 한다는 소문이 현종 말년부터 크게 도는 등 양국민들 사이에 각기 상대국에 의한 침범설이 유포되면서<sup>9)</sup>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南九萬(1629-1711)은 당시 양국 간의 관계를 “저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가 저들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sup>10)</sup>

숙종 즉위 당시 중국의 정세는 1662년 남명정권이 내분으로 붕괴되었지만 吳三桂와 대만을 중심으로 한 鄭成功 집단이 청조와 대치해 있는 상태였다. 청조는 내지를 정복하는 과정에 협조한 세력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던 대표적인 세력들이 오삼계·尙可喜·耿精忠의 ‘三藩’ 집단이었다. 이들은 청조로부터 왕 또는 친왕에 봉해지고 관리의 임명을 비롯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반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청은 이들 세력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시켜 나갔으며 결국 ‘撤藩令’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오삼계는 이에 반발하여 復明을 명분으로 거병하여 사천·호남·광서 등 6성을 점령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청조와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sup>11)</sup>

1674년(현종 15) 오삼계 거병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그것은 그리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숙종대에 들어 거병목적이 명을 다시 세우는 데 있다고 알려지면서 오삼계의 행보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성공의 반란사실까지 전해지자 오삼계나 정성공과 연결하여 북벌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sup>12)</sup> 여기에 오삼계가 復明을 기치로 거병한 사실을 전하면서 전란의 여파를 묻는 대마도 태수의 서신이 전달되자 일본을 매개로 중국 반군과 연락해야 한다는 尹鑣(1617-1680)의 주장과 倭의 서

9)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8월 甲午;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9월 乙丑;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11월 壬午

10) 南九萬, 『藥泉集』 제5, 『請勿以戎事移咨疏』(1674. 11. 19)

11) 金斗鉉, 1993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中國史』 4, 지식산업사, 164-169면.

12) 정금을 통해 오삼계와 연결하여 군사를 일으킬 것을 청한 유학 陳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肅宗實錄』 권1, 숙종 1년 5월 辛未) 당시의 북벌논의에 대해서는 洪鍾佖, 1977 『三藩亂을 前後한 顯宗 肅宗年間の 北伐論』, 『史學研究』 27, 한국사학회, 91-96면 참조.

신을 청나라에 통고해야 한다는 廟堂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북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倭書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정성공 세력과 조선이 연합하여 북벌을 단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와전되고<sup>13)</sup> 심지어는 북벌을 곧 단행될 것이며 언제 실행될 것이라는 그럴듯한 소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sup>14)</sup>

숙종이나 신료들도 내심 오삼계의 활약에 기대를 걸면서 청의 상황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오삼계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북벌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이 오삼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것이 다시 청의 재침입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여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었다. 남인들은 대부분 별다른 자강책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에서 쓸 데 없이 청을 자극하는 것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여 청에 대해 유회책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의정 許積(1610-1680)은 명의 재기 가능성도 기대하였지만 청의 세력이 언제든지 조선을 제압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 청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sup>15)</sup> 조선이 청에 비해 힘의 열세에 있고 더구나 집권 초반 정국의 안정도 도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을 자극하거나, 오삼계의 반란으로 명의 재기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 모두 자신들의 안위와 직접 연관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서인 남구만의 경우에도 효종조 이래 치병해 온 것은 바로 이런 기회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북벌책의 의미를 은근히 부각시키기는 하였지만 청을 자극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었다.

숙종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북벌론에 대해서는 원칙은 옳지만 시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공론화되는 것은 경계하였다. 金翊虎의 북벌 상소에 대해 내용이 훌륭함을 치하하면서도 때에 맞지 않아 실행할 수 없다며 이를 조보에 신지 말도록 지시하고,<sup>16)</sup> 柳濶의 상소에 대해

13) 당시 왜서는 ‘입 달린 사람은 모두 전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備邊司謄錄』 권3, 숙종 2년 3월 11일

14)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2월 辛巳

15)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11월 壬申

16) 『肅宗實錄』 권1, 숙종 원년 4월 乙巳

서도 설욕할 마음은 있지만 형세상 대적할 수 없어 한스럽다는 비답을 내렸다.

대명여리의 공론화를 경계하고 있던 숙종은 청에 유화책을 구사하였다. 청의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명에 대한 의리상 원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숙종은 결국 그것을 허용하였다.<sup>17)</sup> 또 오삼계의 거병 사실을 알리는 일본의 서계를 두고 일본을 매개로 정금과 통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본의 서신을 청에 통고하여 만약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일본의 서신을 청에 통고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sup>18)</sup>

조선의 대청정책은 숙종 2년 말경부터는 청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오삼계에 대한 인식이 정리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삼계가 사실상 중국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1676년(숙종 2) 사행사 權大運(1612~1699)의 보고로 오삼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sup>19)</sup> 숙종은 오삼계가 명을 다시 일으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은 단지 인심을 얻기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하였으며,<sup>20)</sup> 오삼계와의 연합을 통한 북벌을 주장하였던 윤희조차도 오삼계 세력이 오히려 조선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sup>21)</sup> 오삼계 문제가 정리됨으로써 조선의 대청정책의 방향도 분명해졌다. 숙종이 崔明吉(1586~1647)을 종사를 보존시킨 충신으로 선양하였던 사실은<sup>22)</sup> 대청정책의 방향을 짐작케 한다. 북벌과 화친의 노선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친책이 기본적인 외교노선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였지만 대청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의 정세는 청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오삼계 세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오삼계의 손자 吳世蕃이 겨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조선은 물론 중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였다. 그런 가운데 평안감사

17) 『肅宗實錄』 권3, 숙종 원년 3월 丙子

18) 『肅宗實錄』 권4, 숙종 원년 11월 乙酉

19)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3월 戊子

20)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 8월 戊子

21)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 9월 戊申

22)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8월 壬子. 이는 후일 강렬한 의리론자 黃景源이 『明啓臣考』를 지어 최명길의 화친론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황경원의 최명길 비판에 대해서는 鄭玉子, 1998 앞의 책, 115면 참조.

柳尙運(1636-1707) 편에 오세번 패퇴 소식이 들어왔다. 청측 칙사가 정식으로 오세번 패퇴에 관한 조칙을 가져오기 약 1개월 전이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하자 조선은 오삼계 세력의 평정을 진하하는 사신을 들여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케 하고 한편으로 사행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수집에 주력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대청 유회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대청복수론은 대체로 경계되었다. 다만 특정한 사안에 따라 대청복수론이 강조되는 경우는 없지 않았다. 1686년(숙종 12) 조선 월경인들의 청 관리 상해 사건 이후 숙종의 태도 변화가 그러한 예이다. 당시 사건은 산삼을 캐기 위해 월경했던 조선인 韓得完 등이 청 관리를 창으로 찔러 발생한 것인데 사건이 일어나자 청은 주동자 한득완 등 6인을 참형에 처하고 조선 국왕에 대해서는 벌금 2만 냥을 부과하는 조칙을 취하였다. 그런데 마침 연행 중이던 진주사 鄭載嵩(1632-1692)이 이 소식을 듣고 청 예부에 벌금 부과와 관련된 정문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자 청에서는 조선 국왕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정문을 올렸다 하여 문제삼았다. 강희제는 정재승이 직접 정문을 올린 것을 두고 “임금은 약하고 신하가 강한 데 연유함이니 우리 조정의 보호가 없었던들 몇 번이나 찬절을 치렀을지도 모를 일이거니와”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심기가 크게 불편해진 숙종은 노골적으로 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다. 이해 11월 옥당 관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숙종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옛날부터 중국을 침입해서 점거한 오랑캐들이 모두 다 오래 가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청나라 오랑캐는 중국을 점거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천리는 진실로 추측하기 어렵다. 명나라가 덕을 쌓음이 깊고 두터웠으니, 그 자손이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고, 더욱이 神宗 황제는 우리 나라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은덕이 있는데 우리는 국세의 강약에 얽매어 수치를 품은 채 참고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으니 통한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sup>23)</sup>

다음해 2월에도 신종 황제의 은덕을 말하며 명이 빨리 망한 것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주었기 때문인데 조선이 작고 힘이 약해 복수설치하지 못한다

23) 『肅宗實錄』 권17, 肅宗 12년 11월 庚戌

고 현실을 개탄하는 등 숙종의 불쾌한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sup>24)</sup> 이러한 숙종의 반응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대명의리나 대청복수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 2) 집권 후반기 대명의리론의 강화작업

숙종의 대청유화책은 주효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청 역시 조선에 점차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691년(숙종 17) 조선 조공사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一統志』를 사들인 일이 발생하자 청 예부에서 정사 李沈과 부사 徐文重(1634~1709)을 革職시키도록 건의하였지만 강희제가 면하게 해 준 것일 한 예로 들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청의 이러한 유화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1690년대에 들면서 대명의리론을 적극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1693년 3월 숙종은 湖堂에 추천된 사람들에게 임진왜란 때 신종황제의 은혜를 생각하는 뜻으로 ‘披衣憶皇恩’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게 하였다. 또 5월에는 응무당에서 ‘와신상담 20년에 장한 마음 이루지 못해 통분하구나, 존주대의를 어느 때인들 잊을 손가, 龍泉劍 빼들고 온 누리 평정하리’라는 내용의 시를 직접 짓기도 하였다. 1702년(숙종 28)에는 시독관 權尙遊(1656~1724)와 승지 趙泰采(1660~1722) 등이 대명의리와 복수설치에 대해 언급하자 진달한 내용이 격렬하고도 절실하다며 크게 칭찬하였다.<sup>26)</sup> 또 三田渡 비문 가운데 온당치 못한 곳이 많다며 이를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704년(숙종 30) 숙종은 소장에 대명의리와 관계되는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명이 망한지 한 갑자가 되는 해임을 들어 신종의 제사를 위한 廟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케 하여 결국 대보단을 창

24) 노골적인 반감과는 달리 숙종은 사은사를 앞당겨 보내 청 황제의 노여움을 풀고 월급하는 일이 없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법식을 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693년(숙종 19) 초에는 관서 감영과 병사영의 군사훈련도 흑시 청에서 문 제삼지 않을까 하여 중지하였다. 1695년(숙종 21) 북로 군병의 조총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李弘述의 청을 거절하였으며, 權是經·閔鎮厚 등의 같은 청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청과의 관계에 문제의 빌미를 만들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다.

25) 『淸聖祖實錄』 권152, 康熙 30년 7월 乙丑

26) 『肅宗實錄』 권39, 숙종 28년 1월 辛丑



설하기에 이르렀다.<sup>27)</sup>

1690년대 이후 숙종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집권 초반 대명의리론의 공론화를 경계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후일 숙종은 청에서 대보단 창설에 대해 묻는 일이 있을까 두려웠다고 솔직하였다. 겉으로는 태연하였지만 내심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대보단 창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sup>28)</sup> 그러한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대보단을 창설하여 대명의리를 강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 당시 국내외적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외적인 면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문제는 숙종의 청에 대한 인식이다. 대청관계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치욕스런 항복을 했던 인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숙종은 청의 조그마한 상황 변화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17세기 말부터 숙종을 긴장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690년에 들어 전해지고 있던 몽고족의 발흥 소식이었다.<sup>29)</sup> 이 소식은 1690년 10월 귀국한 사행사가 몽고족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청병이 패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듬해 백두산에 올라가 지도를 그리겠다는 청의 공문이 도착하자 이것이 몽고의 강성에 따른 假道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돌면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1692년(숙종 18) 벽두부터 서울에서는 낙향

27) 대보단 창설에 대해서는 鄭玉子, 1985 앞의 논문 참조.

28) 숙종의 우려와는 달리 청의 康熙帝는 大學士에게 유시하면서 조선이 성심성의를 다해 청조를 공경한 것과 함께 明을 배반하지 않은 예의국이라고 칭송하였다. (『淸聖祖實錄』 권227, 康熙 45년 10월 丁未) 청의 유화적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711년(숙종 37)에는 조선이 예의와 법도를 잘 따르고 方物을 바치는 데 나태함이 없었음을 칭찬하며 그간 바쳐오던 공물 가운데 백곰 1천냥과 紅豹皮 142장을 면제하고 아울러 조선국 사행이 머무는 연도의 관사를 수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淸聖祖實錄』 권248, 康熙 50년 10월 戊寅) 이러한 청의 태도에 안심한 숙종은 1713년 좌윤 權尙游가 청의 사신이 대보단의 일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 묻자 대보단을 창설한지 만 10년이 되었으나 아무 일이 없었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설사 묻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 답하였다. (『肅宗實錄』 권54, 숙종 39년 7월 乙丑)

29) 몽고의 발흥에 따른 조선의 반응에 대해서는 鄭奭鍾, 1985 『肅宗代 甲戌換局과 政變參與 階層分析』, 『조선시대정치사의 재조명』, 汎潮社, 142-145면 참조.

하는 사대부들이 속출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도 불안감은 진정되지 않았다. 청이 만일 중원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화가 조선에 미칠 것이라는 호조참판 李寅燁(1656-1710)의 지적이나<sup>30)</sup> 북도 방어가 허술한 상황인데 청에서 무슨 일이 있어 곧장 내려온다면 큰 일이라는 특진관 李思永의 우려는<sup>31)</sup> 당시의 불안감을 잘 보여준다. 1702년(숙종 28) 12월 절강성 寧波의 해적이 중국을 침범했다는 소문이 돌자 불안감은 극에 달하였다.

국내 상황 또한 심상치 않았다. 이 시기 국내 문제를 특히 어렵게 만든 것은 자연재해였는데 숙종 15년 이후 거의 해마다 흉년이 들지 않은 해가 없었으며 여역까지 만연하였다.<sup>32)</sup> 계속된 자연재해로 식량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도적이 창궐하여 관아를 습격하는 일이 급증하고 도성에는 기민이 운집하였다.<sup>33)</sup>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1697년(숙종 23) 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은 이를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2만석은 유상, 1만석은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숙종이 변경에 직접 행차하여 사례를 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34)</sup>

국내외적인 상황이 심각해지자 숙종은 대비책의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국내의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동요할 일도 아닌 사안에 소란을 떠는 사대부들의 행태를 경계하는 내용의 비망기를 내렸다. 아울러 몽고족 혹은 海寇의 강성에 따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강화책을 추진하였다. 1690년(숙종 16) 강화도 축성을 지시하고<sup>35)</sup> 1702년에는 1685년 범월 사건 이후 서북변에서 거둬들었던 조총을 돌려주고 試放하도록 하였으며 李濡(1645-1721)에게 海防을 신칙하였다. 하지만 숙종의 국방강화책은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신료들은 내정을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만 물리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던가 성과 보루를 수축하고 군병을 훈련시키면 청의

30) 『肅宗實錄』 권34, 숙종 26년 10월 甲子

31) 『肅宗實錄』 권35, 숙종 27년 3월 己酉

32) 당시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李泰鎭, 1996 『小氷期(1500-1750)의 천체 현상적 원인-『조선왕조실록』의 관련기록 분석-, 『國史館論叢』72 참조.

33) 李泰鎭, 1985 『朝鮮後期の政治와 軍營制의 變遷』, 한국연구원, 233면.

34) 『肅宗實錄』 권32, 숙종 24년 4월 癸酉

35) 하지만 이는 기근을 이유로 든 權大運 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였다.<sup>36)</sup> 때문에 대홍산성의 수리는 청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이유로 중지되었으며,<sup>37)</sup> 평안도 병영의 군사조련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다른 도의 예에 따라 하도록 결정되었다.<sup>38)</sup>

신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숙종은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숙종은 새로 성을 쌓는다면 모르지만 예전의 성과 해자를 수리하는 것도 청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청의 형세가 예전과 같지 않아 엄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박하였다. 1689년(숙종 15) 강화 축성 논의 당시에는, 부제학 李鳳徵(1640-1705)과 어영대장 李義徵(?-1695) 등이 난색을 표하자 화가 난 숙종이 번번이 일을 미루어 성취되는 것이 없다고 질타하고 이에 위촉된 신하들이 다음해 봄에 역사를 시작하자는 뜻을 전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up>39)</sup> 이처럼 견해의 불일치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경연관 李玄逸(1627-1704)은 “친리의 영토를 가진 임금으로서 원수에게 부림을 당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즉위한 이래 지금 20년이 되도록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침차 게으르고 안이한 데로 빠져들고 있다.”<sup>40)</sup>고 답답한 심전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국방책에 대한 견해차는 북한산성 축조를 놓고 다시 나타났다. 북한산성 축조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강화도와 남한산성이 두 차례 호란으로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sup>41)</sup> 특히 즉위초부터 축성지의 형세를 조사시킨 바 있던 숙종은 1703년(숙종 29) 정월 우의정 申玩(1646-1707)의 상소를 기점으로 북한산성 축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축성사업을 진행시키려 하였다.<sup>42)</sup> 하지만 사업은 金昌集(1648-1722)·金鎭龜(1651-1704)·민진후 등이 제기한 도성수축론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

36) 李玄逸, 『葛菴集』 권6, 『經筵講義』 己巳年 10월 11일조

37) 『肅宗實錄』 권24, 숙종 18년 7월 庚午

38) 『肅宗實錄』 권25, 숙종 19년 1월 丁未

39) 李玄逸, 『葛菴集』 권6, 『經筵講義』 己巳年 9월 3일조

40) 李玄逸, 『葛菴集』 권6, 『經筵講義』 甲戌年 3월 6일조. 이현일은 1689년부터 1694년까지 경연에 참여하였다.

41) 북한산성 축조과정에 대해서는 李泰鎮, 앞의 책, 232-243면 참조.

42) 축성사업을 주도한 것은 신완을 비롯해 병조판서 이유, 이조판서 金構 등 탕평파들이었다. 탕평파에 대해서는 鄭景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韓國史論』 3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53면 참조.

다. 숙종은 해방의 일을 더욱 신척해야 할 것인데 대신들이 대답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였으며<sup>43)</sup>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일이 진행되어 3월에 시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축성사업은 한 달 만에 중단되고 4월에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었다. 대체로 성을 쌓을 만한 큰 일도 없으며 청인들이 그것을 문제삼을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노론 민진후의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청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정면으로 축성을 비판하였다. 소론측에서도 서문중이 내부가 험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인엽이 龍虎之脈인 북한산에 함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숙종은 민진후의 지적에 대해 예전에 왕래하던 통역관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 전일의 약조를 알지 못할 것이며 청인들이 반드시 질문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는 다만 걱정되는 것은 海路를 통해 들어올지도 모를 적인데 자신은 두렵지 않으며 스스로 떠맡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대신들은 스스로 떠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며 반격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sup>44)</sup>

축성작업의 차질은 결국 숙종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드러낸 것이었다. 숙종은 각 정치세력들을 조제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으며 북한산성 문제에서 잘 나타나듯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유사시 임금의 피난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성 축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숙종으로서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대보단 설치는 바로 그러한 조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색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대명의리를 내세움으로써 흐트러진 전열을 국왕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보단 창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인 李畬(16445-1718)나 민진후 등의 노론세력이었다.<sup>45)</sup> 앞서 본 것처럼 이들은 대개 북한산성 축조론에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대보단 창설을 기점으로 숙종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참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1705년(숙종 31) 치세 30년을

43) 『肅宗實錄』 권40, 숙종 29년 3월 癸亥

44) 『肅宗實錄』 권40, 숙종 29년 4월 戊寅

45) 鄭玉子, 1998 앞의 책, 81면.

기념하는 稱慶을, 이듬해에는 進宴을 청하여 성사시켰으며 1707년(숙종 33) 이후 계속 尊號를 청하는 등 숙종의 왕권 강화 기도에 부합하였다.<sup>46)</sup> 그리고 1710년(숙종 36) 요동지방의 이양선 출몰을 계기로 북한산성 축조론이 재등장하자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축조론에 찬동하였다. 민진후는 外洞까지 포함하여 축성한다면畿内の 백성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으며, 김창집 역시 형세상 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7)</sup> 이에 힘을 얻은 숙종은 변경을 굳게 지켜 적으로부터 임금을 보호해야 하며 결단은 국왕 자신이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축성을 지시하여 마침내 1711년(숙종 37) 축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다.<sup>48)</sup>

노론이 대보단 창설을 계기로 숙종의 의도에 부합했던 반면 소론들은 입장을 달리하였다. 이들은 대보단 창설과정에서는 대보단 창설 자체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송시열의 유업을 잇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 내지는 침묵으로 논의를 회피하였다.<sup>49)</sup> 또 숙종에 대한 칭경이나 존호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거나 반대하였으며 북한산성 축조 재논의 과정에서도 소론 대신 영의정 徐宗泰(1652-1719)가 끝까지 반대하고 李光佐(1674-1740)는 蕩春臺 외성축성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축성에 비판적이었다. 노론의 지지를 끌어냈지만 소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숙종의 대명의리 강화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6) 鄭景姬, 앞의 논문, 158면.

47) 노론들의 북한산성 축조 지지는 자파세력 강화를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1712년 교리 이하원은 “남북을 돌아보아도 지금 형체를 드러낸 근심이 없는데 축사의 역사가 서울에서 외방까지 두루 퍼져 있습니다. 묘당의 신하들은 이를 기회로 자리를 굳히는 계책으로 삼고 무엇을 바라는 무리들은 이를 빙자해 출세하는 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데도 성을 쌓는 것은 옛사람들이 경계한 일”(『肅宗實錄』 권52, 숙종 38년 10월 甲子)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이는 노론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48) 『北漢誌』 『事實』

49) 鄭玉子, 1998 앞의 책, 82면.

### 3. 영조대 대명의리 정책

#### 1) 집권 전반기 대명의리 통제책

영조는 청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예를 들어 연접 도감당상 申思喆(1671-1759)이 청의 칙사에게 정례는 이외의 은자를 주지 말도록 청하자 영조는 혹시 나라를 욕되게 할 염려가 있으니 숙종 말년 이후 계속 더해 주었던 관례에 따라 더 주도록 지시하였다. 또 칙사가 돌아갈 때 구례에 따라 병을 핑계대고 친히 송별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친송하였다.<sup>50)</sup> 이러한 태도는 집권 기간 내내 계속되어 1730년(영조 6) 청에서 지진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접하자 조선과 청의 관계를 ‘脣齒’의 관계로 표현하며 청나라 황제는 항상 조선을 돌봐주는데 조선은 빈들거리며 지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sup>51)</sup>

청 역시 조선과는 계속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명의 『十六朝紀』에 인조가 광해군을 폐하고 등극한 사실이 찬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옹정제가 받아들였던 데서 청의 태도는 잘 드러난다. 『십육조기』의 오류는 1676년(숙종 2) 처음 지적된 이후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것인데 1727년(영조 3년)에 들어 비로소 수정된 것이다. 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개정된 『명사』 『朝鮮列傳』을 빨리 반포해 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초록을 공포하게 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하였다.<sup>52)</sup> 건륭제는 관원이 차출되어 조선으로 갈 경우 조선으로부터 받는 향응과 예물을 반으로 줄이고 이를 법령화하도록 예조에 지시하였다. 청은 여러 번방 가운데 조선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sup>53)</sup>

대청관계가 안정되어 가면서 소론계 일부에서 청의 중원지배를 인정하는 현실론이 제기되는 등 청에 대한 인식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50) 『英祖實錄』 권4, 영조 원년 3월 己未

51) 『英祖實錄』 권28, 영조 6년 11월 壬午

52) 『清世宗實錄』 권116, 雍正 10년 3월 丁卯

53) 陳尙旻, 1997 『中韓交流三千年』, 中華書局, 44-45면.

趙龜命(1693-1737)은 명이 망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당시까지도 복수론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회의하였으며,<sup>54)</sup> 鄭齊斗(1649-1736)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이미 청의 연호를 받았으면 궤배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5)</sup> 뒤 시기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鄭基雨(1832-1890)는 병자호란으로 청과의 관계가 불편하였으나 옹정(1723-1735)·건륭(1736-1795) 년간에 들면서 화호가 굳어져 청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대청관계의 변화상을 정리하였는데<sup>56)</sup> 이는 정확한 분석이었다.

숙종대부터 이미 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대명의리 의식은 대청인식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약화되었다. 상의원 직장 韓德師라는 인물은 穆陵 齋郎으로 있으면서 『健元陵誌』에 청의 연호를 기입하여 사판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대명의리의 약화상을 잘 보여준다. 대명의리를 강조하던 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 당혹해하며 “先正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萬東祠의 창건까지 비난하며 배척하고 있다”<sup>57)</sup>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권상하가 죽은 후 만동묘가 잡초만 가득한 황량한 사옥으로 변해버렸다는 데서<sup>58)</sup> 짐작할 수 있듯 노론측의 전열도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대명의리의 약화는 전체적인 추세였으며 이러한 추세에 대해 金若魯(1694-1753)는 “전에는 사람들이 대의를 말하면 강개하여 눈물을 흘렸으나 지금은 한 마디라도 의리에 관계되는 말이면 반드시 무리들이 조소하고 비웃으며, 전에는 연경에서 상을 받고 歲幣受價하는 것을 다 치욕으로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전대하는 자리를 다투고 조정에서 대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sup>59)</sup>고 탄식하였다.

이처럼 영조대는 기존의 대청, 대명 인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던 시기였다. 영조는 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대명의리에 충실하였다. 집권하면서 효종대 이래 국가적인 이념으로 지속되온 ‘尊周攘夷’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표명한 바 있던 영조는<sup>60)</sup> 그러한 표명대로 사대부

54) 유봉학, 앞의 책, 60면.

55) 鄭在薰, 1993 『霞谷 鄭齊斗의 陽明學受容과 經世思想』 『韓國史論』 29, 서울대 국사학과, 180면.

56) 鄭基雨, 『雲齋遺稿』 『送族姪蓉山尙書健朝赴燕序』(1873)

57) 『英祖實錄』 권11, 영조 2년 7월 乙未

58) 『英祖實錄』 권8, 영조 원년 12월 丙子

59) 『英祖實錄』 권34, 영조 9년 6월 戊午

들이 남한산성의 치욕을 점차 잊어가는 세태를 개탄스러워 하는 등 대명의를리를 강조하였다.<sup>61)</sup>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명의를리의 주도자가 국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747년(영조 23) 11월 주례를 강하는 자리에서 검토관 李奎采(1703-1765)가 대의를 바로 세운 송시열의 공로를 말하자 “임금이 있는 연후에 신하가 있는 것이니 효종 임금이 아니었다면 어찌 대의를 천하에 밝힐 수 있었겠는가”<sup>62)</sup>라고 맞대응하였던 데서 영조의 입장은 잘 드러난다. 대명의를리가 효종에 의해 주창된 것임을 확인시키고 앞으로도 대명의를리는 국왕이 주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sup>63)</sup> 반면 신료나 유생들이 대명의를리를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경계하였다. 경연석상에서 승정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대명의를리를 강조하기보다 승정 왕제가 ‘나는 망국의 군주가 아닌데 제신들은 바로 망국의 신하라’하였음을 상기시키고, 또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黨禍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명심하도록 지시하였던 데서<sup>64)</sup> 영조의 심증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대명의를리를 주도하고자 한 영조의 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왕권강화의 측면이다. 영조는 일찍이 자신이 대보단에 가서 신하의 예를 취하는 것은 신하들로 하여금 군신의 예의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sup>65)</sup> 자신이 명의 황제에 대해 예의를 표하는 것처럼 신료들도 자신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몸이 좋지 않으니 황단의 향례를 설행하라는 청에 대해 “조신들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존주의 의리를 펴고자 한다”며 친행을 강행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영조의 의도는 엿보인다.

왕권강화 의도는 신료 내지 유생들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과 결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조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 후에는 각 정파 간의 대립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특히 영조의

60) 『英祖實錄』 권8, 영조 원년 12월 戊寅

61)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7월 乙未

62) 『英祖實錄』 권66, 영조 23년 11월 庚寅

63) 朴光用, 1985 『蕩平論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309면.

64) 『英祖實錄』 권30, 영조 7년 11월 辛未

65) 유봉학, 앞의 책, 60-61면 참조.



즉위를 도왔던 노론들은 영조 원년의 을사환국을 거치며 전면에 나서 당론을 내세우며 영조를 압박하였다. 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韓元震(1682-1751)·尹鳳九(1683-1768) 등 송시열계 산림을 경연에 대거 기용하고자 하였다.<sup>66)</sup> 경연에 적극 참여했던 한원진이 처음 영조를 알현한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도 복수설치 의리였던 데서 나타나듯 이들 산림들은 의리론에 투철한 인물들이었다.<sup>67)</sup> 노론의 의리론이 정치적 討逆論으로 연결되자 영조는 결국 정미환국을 통해 노론 강경론자들을 축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온건 노론의 영수 洪致中(1667-1732)만 해도 효종이 산림을 불러들여 의리를 펴려 했던 일을 거론하며 은연 중 노론 산림의 초빙을 건의하였으며,<sup>68)</sup> 노론계열의 산림이나 유생들은 송시열의 문묘중사를 주장하는 등 외곽에서 지원하였다.

영조는 스스로 의리를 만들어 당론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산림이나 유생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며 강력히 견제하고자 하였다.<sup>69)</sup> 이들에 대한 견제는 자연 대명의리론의 공론화를 막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기사·공자·주자를 배향한 三聖祠를 철회하라는 명령은 주자주의를 강조하고 송시열을 주자를 계승한 인물로 부상시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론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은 명분론을 좋아하는 군주가 아니라고 했던 영조는 대명의리론에 대해서도 때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청에서 조선이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영조는 청도 우리가 그렇게 청을 잊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받아 넘겼다.<sup>70)</sup> 이는 뒤집어 말하면 청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과 같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사신들이 뇌물을 주어 자문에 국왕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했다는 보고를 접하자 번국의 자문에 국왕의 이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66) 鄭景姬, 1998 『英祖前半期(1724년-1748년) 중앙학계와 英祖의 性理學 이해』, 『韓國史研究』 103, 韓國史研究會, 188-190면.

67)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8월 辛未

68) 『英祖實錄』 권25, 영조 6년 2월 丁卯

69) 朴光用, 앞의 논문, 310-312면.

70) 『英祖實錄』 권23, 영조 5년 8월 壬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sup>71)</sup>

영조가 대명의리론의 공론화를 견제한 또 다른 이유는 자칫 청과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이다. 영조는 청과의 사이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1726년(영조 2) 2월 聖廟의 축사에 청의 연호를 쓰지 말게 하라는 상소가 있자 대의를 지키는 뜻에서 나왔으니 대신들에게 의견을 구하겠다 하고는 몇 달 뒤 홍치중이나 민진원 등의 대신들이 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효종대에도 같은 청이 있었지만 누설되어 사단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허락치 않았음을 들어 후에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sup>72)</sup>

청과의 관계로 인해 대청복수론은 특히 경계되었다. 영조는 자신의 마음은 황단에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대부의 폐단이 되어 청국의 일에 대해 크게 말하여 국가에 욕이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sup>73)</sup> 청에게 당한 원통함은 잊지 않아야 하지만 복수와 관련된 일을 함부로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74)</sup> 때문에 1739년(영조 15) 부제학 吳璵(1700-1740)의 복수설치 상소가 있자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썩은 유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비난하면서 상소 내용이 발설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sup>75)</sup> 송시열의 현손 宋能相(1709-1758)이 복수설치의 의리를 논한 상소를 올리자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상소를 두고 내리지 않았다.<sup>76)</sup>

영조의 대명의리 주도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sup>77)</sup> 신료나 유생들과의 마찰을 초래하였다. 1733년(영조 9) 부교리 김약로는 탕평책으로 기강이 해이해지고 의리가 약화되고 있다며 대명의리가 약화되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특히 신하들을 억누르려 하는 영조의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

71) 『英祖實錄』 권59, 영조 20년 6월 丙辰

72)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7월 丙午

73) 『英祖實錄』 권49, 영조 15년 3월 辛亥

74) 『英祖實錄』 권41, 영조 12년 6월 己丑

75) 『英祖實錄』 권49, 영조 15년 2월 己丑

76) 『英祖實錄』 권51, 영조 16년 3월 丙寅

77) 이는 1734년(영조 10) 소론 李宗城이 “공자가 『춘추』를 지었으면서도 실제로 이를 행하지 못하여 공언이 되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 영조가 왕의 지위에서 춘추의 權柄을 잡게 되었으니 형정을 밝혀 만세의 법을 드리우라’고 주문하였던 데서 짐작할 수 있다. 鄭景姬, 1998, 앞의 논문, 204면.

였다.<sup>78)</sup> 1743년(영조 19)에는 정언 趙重晦(1711-1782)가 소를 올려 상규를 벗어나 중국 사신 일행을 50리 밖에서 맞이하고 특별히 의장과 고취를 내려 영접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며 영조를 비판하고 나섰다.<sup>79)</sup> 또 1745년(영조 21)에는 四學儒生 洪啓億 등이 상소를 올려 영조가 『御製常訓』 가운데서 ‘尊周’의 周자를 王으로 바꾸어 대명의리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sup>80)</sup>

신료나 유자들의 반발에 영조는 강력히 대응하였다. 김약로의 소장이 들어오자 임금이 하교한 뒤에 감히 舊習을 생각한다고 질책하면서 파직하였고 청인들에게 숨겨야 말이 있다는 이유로 疏本은 궐내에 유치하게 하였다. 조중희의 상소에 대해서는 격노하여 책상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왕위를 물리겠다는 뜻을 보였고 이로 인해 몇 개월 간 언로가 막히기까지 하였다. 홍계억 등이 상소를 올리면서 黃紙를 붙이고 송정연호를 쓴 것을 보고 사람들이 훌륭한 상소라고 생각하여 중국까지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난하면서 疏本은 불사르고 疏頭와 소장을 지은 掌議 및 色掌을 모두 파면시켜 庶人으로 삼도록 지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sup>81)</sup>

1745년(영조 21) 9월 영조는 皇朝에 존복하려는 마음이 도리어 유생들을 속인 결과가 되었으며 평소 존주하던 정성이 그들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조정을 수습할 수 없다고 자탄하는 내용의 비망기를 내리면서 전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82)</sup> 이는 그간의 대명의리 주도책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2) 집권 후반기 대명의리론의 강화작업

집권 후반에 들면서 영조는 대명의리론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1747년(영조 23) 李壽頤로 하여금 『尊周錄』을 가지고 들

78) 『英祖實錄』 권34, 영조 9년 6월 戊午

79) 『英祖實錄』 권50, 영조 19년 11월 丁未

80) 『英祖實錄』 권62, 영조 21년 8월 甲辰·乙卯

81) 『英祖實錄』 권62, 영조 21년 8월 丙午. 영조는 강화도 축성은 李瑱이 반대하고, 도성 수축은 洪重孝가 반대하고 『常訓』을 기술하러니 유생들이 반대한다며 신하나 유생들의 태도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82) 『英祖實錄』 권62, 영조 21년 9월 庚辰

어와 대의를 진술하도록 명령하고, 한 질을 들여보내도록 지시했던 것은 상징적인 조치였다. 『존주록』의 존재는 4년 전인 1743년(영조 19)에 이미 영조에게 보고된 바 있었는데 이때에 들어 책자를 들이도록 명령한 것이었다.<sup>83)</sup> 이는 대명의리의 공론화를 경계하던 전반기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영의정 김재로가 오히려 사가의 문자를 가져다 보면 후일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며 만류하는 형편이었다.

『존주록』을 들이도록 지시한 것을 기점으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1748년에는 대보단의 의주에 관한 수정작업을 마무리하여 『皇壇儀』를 간행하였으며, 『尊周彙編』의 『皇壇志』도 거의 완성하였다. 『황단의』에는 부록으로 『華陽洞志』를 실어 송시열과 그 제자들이 제시한 존주론 형성의 초기 단계에 대한 제반 내용을 보충하였다.<sup>84)</sup> 대명의리는 1749년(영조 25) 대보단을 증진하면서 극도로 강조되었다. 영조는 명의 재조지은을 거론하면서 대보단에 太祖를 추가하여 제사할 것을 지시한 후 손수 대보단의 그림을 그려 내리고<sup>85)</sup> 그 역사를 친히 둘러보는 등<sup>86)</sup>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영조가 집권 후반에 들면서 전반기에 비해 의리론을 강화하고 있음은 경연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87)</sup>

영조의 태도는 집권하면서부터 강조해 온 국왕 중심의 의리 확립이라는 점과 관련된다.<sup>88)</sup> 하지만 집권 전반기에는 대명의리를 강조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국왕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는 했어도 구체적으로 대명의리 선양 작업을 추진한 일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집권 후반 영조의 태도는 이전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조의 태도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sup>89)</sup>

83) 鄭玉子, 1998 앞의 책, 110-111면.

84) 위의 책, 109면.

85) 『英祖實錄』 권69, 영조 25년 3월 辛未

86) 『英祖實錄』 권69, 영조 25년 3월 壬申

87) 鄭景姬, 1999 『英祖後半期(1749년-1776년) 經筵과 英祖의 義理論 강화』, 『歷史學報』 162, 歷史學會.

88) 영조의 왕권강화책과 의리론에 대해서는 朴光用, 앞의 논문, 303-312면 참조.

89) 신료들 사이에 대명의리론이 공론화되는 것은 여전히 경계하였다. 예를 들어 1768년 金若行이 명나라 황통이 끊어졌으니 조선도 황제 칭호를 쓰고 천자의 예악을 쓸 것을 주장하자, 박세체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743년(영조 19) 4월에 내려진 자강의 방도를 마련하라는 영조의 지시이다. 건륭제가 심양에 행차한다는 소문이 있자 이것이 혹시 몽고족의 준동에 따라 청인들이 그들의 본거지인 寧古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여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sup>90)</sup> 7월에도 대신과 비국당상을 불러들여 자강책을 마련하도록 명하였다.<sup>91)</sup> 이해 8월 신료들에게 도성을 지키는 것과 강화도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를 물을 정도로<sup>92)</sup> 영조는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미 도성수비책을 염두에 두고 있던 영조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1745년(영조 21) 7월 三軍門으로 하여금 도성을 보수케 하였다. 이어 1746년(영조 22)에는 수성을 기본방침을 정하였으며 12월에는 『守城節目』을 마련하였다. 1751년(영조 27)에는 5부 방민들에게 수성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守城綸音』을 반포하였다.<sup>93)</sup>

하지만 영조의 의지와는 달리 자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재정부족 때문이었다. 1754년(영조 30) 영조는 청의 불안한 상황이 조선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며 “강역의 근심이 이러한데, 지금의 인심을 믿을 수 있으며, 병력을 믿을 수 있으며, 기강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의 급선무는 저축을 넓히는 한 가지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하교한 바 있다.<sup>94)</sup> 자신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인데, 급선무로 특별히 저축을 강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저축의 강조는 재정 부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조선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은 대청 무역 적자였다.

17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조선은 청의 해금정책에 편승하여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 매년 50-60만냥의 왜은을 벌어들였지만 1684년 해금정책이 철폐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sup>95)</sup> 중국 상선들이 직접 나가사키

김약행을 서인으로 삼고 흑산도로 정배시키는 등 강력하게 처리하였다.

90) 『英祖實錄』 권57, 영조 19년 4월 戊子

91) 영조가 대신과 비국당상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던 1743년 7월 荷皇恩의 옛 詞章이 적합하지 않다며 손수 새로 3장을 지어 內宴 때 쓰도록 지시한 데서도 (『英祖實錄』 권58, 영조 19년 7월 己酉) 양자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92) 『英祖實錄』 권58, 영조 19년 8월 丁卯

93) 李泰鎮, 앞의 책, 251-253면 참조.

94) 『英祖實錄』 권82, 영조 30년 9월 乙未

95) 17세기 대청무역의 양상에 대해서는 柳承宙, 1991 『朝鮮後期 朝·淸貿易小考』, 『國史館論叢』 30,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와 교역하면서 중개무역은 필요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은 유입도 중단되었다. 중개 무역을 담당했던 역관층도 물론 쇠퇴하였다. 역관층이 쇠퇴하면서 새로 사상들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들은 연행 역관들과 결탁하여 청에 들어가 비단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들여온 후 국내 유통망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오랑캐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청론도 여전히 존재하였지만 대청인식의 변화로 청 물품의 수요는 충분하였다. 사상들이 사들여오는 짐이 말로 천 여 필에 달했다는 데서 당시의 무역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sup>96)</sup> 여기에다가 사행시 조선 사신이 가져가는 報單 자체도 여타 국의 10 배에 달한다고 이야기 될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 그 때문에 이미 영조 초에 서울과 지방의 은화가 연행사신의 비용때문에 탕갈되었다고 보고되는 형편이었다.<sup>97)</sup>

무분별한 대청무역은 재정 적자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교문제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조선상인들 가운데 청인들로부터 은을 빌려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일 중개무역의 쇠퇴 탓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1727년(영조 3년)의 경우 총부채가 7만 여 냥에 달하였다. 그러자 청의 鳳凰城將은 이것이 公債라고 하며 조선정부에 대신 갚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sup>98)</sup> 청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중시하던 영조에게 자칫 큰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영조는 또 다른 이유에서도 대청무역을 경계하며 사행시 은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몽고족때문이었다. 영조는 몽고인들이 조선에서 은이 나는 것을 알게 되면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자칫 망국의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sup>99)</sup>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영조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대청무역을 강

96) 『英祖實錄』 권13, 영조 3년 10월 申亥. 18세기 사상들의 무역 활동에 대해서는 金廷美, 1996 『朝鮮後期 代淸貿易의 전개와 貿易收稅制의 시행』, 『韓國史論』 36, 서울대 국사학과, 166-178면 참조.

97) 『英祖實錄』 권13, 영조 3년 10월 丙午

98) 『英祖實錄』 권13, 영조 3년 3월 癸丑

99)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 11월 辛卯

력히 통제하고자 하였다. 영조는 대청무역의 근저에 사치풍조가 놓여 있으며 따라서 사치풍조의 금지야말로 무역적자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영조는 스스로 ‘禁奢主人’으로 자처하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1746년(영조 22) 4월에 차후로는 사행 때 곤복과 군용 이외에는 무늬 있는 비단을 사오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11월에는 무늬있는 비단뿐 아니라 기교한 물건은 일절 금하도록 하고 1747년(영조 23)에는 무늬있는 비단을 수입해 오는 역관과 장사치는 의주에서 바로 효시한 후 알리도록 지시하였다. 1748년에는 무늬가 없는 비단까지도 일절 수입을 금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성절목』의 제정, 청 물품의 수입금지, 『존주록』을 들이라는 조치 등이 1746년과 1747년에 집중적으로 취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몽고족의 발흥에 대비한 국방강화책, 무역역조 해소를 통한 국내재정 안정, 대명의리론의 강조 등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가운데 특히 대명의리론은 국방강화와 대청무역 통제의 이념을 제공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명에 대한 의리는 하성의 치욕을 망각한 채 무사안일에 익숙해져가는 세태를 경계하면서 분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방책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청무역의 경우 대청인식의 변화에 수반하여 활성화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무역통제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내부적으로 자강책의 마련에 집중했던 영조는 한편 청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청사를 대함에 거짓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몸소 모화관에 나가 청 사신을 영접하거나<sup>100)</sup> 청 사신의 접대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함경도 관찰사 金陽澤을 파직시키는 등<sup>101)</sup> 집권 초 이래의 우호책을 그대로 견지하였다. 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영조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데 이 때문에 영조는 청에 지나치게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sup>102)</sup> 그런 점에서 집권 후반기 영조의 대명의리 강조는 그 같은 비난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100) 朴光用, 앞의 논문, 311면.

101) 『英祖實錄』 권85, 영조 31년 8월 庚申

102) 『英祖實錄』 권85, 영조 31년 8월 辛酉

####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 후기 대명의리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숙종 초반 조선과 청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두 차례 호란을 겪었던 조선은 또 다시 청의 침입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였으며 청은 청대로 조선이 오삼계 세력 등과 연합하여 침범해 오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불안정한 정황을 틈타 북벌을 단행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즉위한 숙종은 가능한 한 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북벌론이 공론화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으며 대명의리론도 특별히 강조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1690년대로 접어들면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 대명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마침내 1704년 대보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숙종의 이렇게 대명의리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몽고의 강성과 국내 정세 불안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방책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영조는 집권하면서부터 국왕이 대명의리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료들이나 유생들이 대명의리를 함부로 거론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이는 신료들이나 유생들이 의리를 거론하며 자파의 의리를 내세우려는 시도를 차단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소지를 없애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영조 또한 숙종과 마찬가지로 집권 후반에 들면서 대보단을 중수하는 등 대명의리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영조의 조치는 몽고족의 발흥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책을 마련하고 대청무역 역조를 해소하여 국내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취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수성절목』의 제정, 청 물품의 수입금지, 『존주록』을 들이라는 조치 등이 1746년부터 174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러한 추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상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숙종과 영조대에 대명의리론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숙종이나 영조는 대명의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대명의리론을 강조하



거나 또는 견제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 의도는 어느 경우에는 왕권 강화와 같은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어느 경우에는 국방강화와 같은 군사적인 것이었고 또 어느 때는 무역통제와 같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의도한대로 관철되었던가 하는 점은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지만 대명의리론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였다는 자체에서 대명의리론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명의리론은 조선 문화 수호의 핵심적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대명의리론이 현실적으로 기능할 수 있던 힘의 원천은 명분에 있었다. 대명의리론의 명분이 인정되지 못했다면 현실 공간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숙종·영조대에 대명의리론은 명분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며 명분과 현실 양자 간에 괴리가 나타날 때 대명의리론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되는가는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종대 대명의리론의 성격을 살피지 못하여 한 것은 무엇보다 큰 한계이다. 논지의 전개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을 국왕에 맞추으로써 대명의리론에 내포된 다양한 성격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 사상의 실제적 기능 주제의 특성상 추론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으며 그러한 추론 가운데 오류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필자 :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lt;Abstract&gt;

The Socio-Political functions of Daemyeong Euri  
Discourse(對明義理論) in  
Sukjong(肅宗) · Yeongjo(英祖)

Roh, Dae-hwan

Daemyeong Euri Discourse is a claim that the Chosun Dynasty (1392-1910) needs to keep faith with the Ming Dynasty (1368-1644), which dispatched reinforcements to Chosun Korea during the Hideyoshi Invasions. This discourse was often accompanied by the claim called Daecheong Boku Discourse (對清復讐論), which means that Chosun must retaliate on the Qing Dynasty that destroyed the Ming Dynasty in 1644. While Bukbeol Discourse (北伐論) claiming to destroy the North (Qing) based on Daemyeong Boku Discourse was getting less effective as Qing China came to settle down,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or Jonju Discourse (尊周論) claiming to respect Zhou Dynasty continued to play a role as an alternative proposal that was very influential in Chosun Society until the late 19th century. Until now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has been perceived mainly through the perspective of moral obligation. However, if an ideology proved to be effective in a society for longer than two centuries, it is m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deology had some effective values within the society. The fact that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was emphasized in specific periods means that there were special reasons why it had to be

emphasized then.

The reasons why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was emphasized in Chosun Korea varied depending on each period. King Sukjong (r. 1675-1720) stressed it in order to have Chosun Korea prepared for an unexpected situation, while being careful not to have Chosun's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worse. King Yeongjo (r. 1725-1776) emphasized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to provide an effective defense method against the rise of Mongolia, as well as to settle down the domestic economy by solving the adverse trade balance with Qing China. King Jeongjo (r. 1777-1800), who sought a measure to enrich and strengthen Chosun Korea, found its spiritual doctrine in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Each king of the Chosun Dynasty had different reasons why they had to emphasize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But they all aimed to acquire some special effects by doing so, and it seems that their attempts were successful to an extent. The Daemyeong Euri Discourse appears to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Chosun society during the 18<sup>th</sup> century. It gradually became weak, but was still very effective by the 19<sup>th</sup> century.

Key Words : Daemyeong Euri Discourse (對明義理論), Daecheong Boksu Discourse (對清復讐論), Jonju Discourse (尊周論)